

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

**참여전,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2020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



중견기업과 함께
내일을 보다

202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

2020. 03. 30(월) 10:00 - 17:00 | COEX B1 Hall

www.fome-job.com

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노동부 주관 **FOMEK**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IBK기업은행

일시	2020.03.30(월)		
장소	서울 강남구 Coex Hall B1		
참가대상	우수 중견기업 80개사 이상, 참여 구직자 4,000명 이상		
행사구성	채용상담관, 심층면접관, 취업특강, 개막식, 부대행사관 등		
주최	산업통상자원부, 고용노동부		
주관	한국중견기업연합회, IBK기업은행		
기업신청기간	~ 2020.02.21(금)	개인신청기간	2020.03.02(월) ~ 03.30(월)
문의처	02-6365-7008	FAX	02-393-8210
담당자	박람회 운영사무국	E-MAIL	career@keddisco.com
사이트(출처)	http://fome-job.com		

*자료출처 : <http://fome-job.com>

□ 2020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



일시	2020.4.6.(월)-4.7.(화), 09:30-18:00		
장소	COEX C 1-2홀		
참가대상	취업을 원하는누구나 , 참가기업 약 150개사, 방문구직자 약 15,000명		
행사구성	(채용상담관) 기업-구직자 1:1 또는 1:多 현장상담 외 기타 부대행사		
주최	산업부, 서울시		
주관	KOTRA, 금감원		
기업신청기간	주관측에 문의	개인신청기간	홈페이지 사전등록및 행사당일참석
문의처	02-3460-7846	FAX	--
담당자		E-MAIL	jf@kotra.or.kr
사이트(출처)	http://www.jobfairfic.org/v20/		

*자료출처 : <http://www.jobfairfic.org/v20/>

□ 2020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

제16회 서울시 장애인취업 박람회

함께하는 기쁨 일하는 행복

2019.4.17.(수) 10시~16시 | SETEC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제 1-2 전시실 3호선 학여울역

주최 서울특별시
 주관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문의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사무국 1588-1954

2019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
 함께서울 누리축제

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가 궁금할때?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온라인박람회 2019.3.25~4.26 <http://jobable.seoul.go.kr>

일시	2020년 4월 20일(월) 10:00~16:00		
장소	SETEC(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) 제1, 2 전시실 - 3호선 학여울역		
참가대상	300개 기업 및 10,000여 명의 구직 장애인		
행사구성	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구직자		
주최	서울시		
주관	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, 한국장애인고용공단		
기업신청기간	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사무국문의	개인신청기간	행사당일 참석
문의처	070-4287-1625	FAX	02-796-9857
담당자		E-MAIL	jobable@hanmail.net
사이트(출처)	http://job.seoul.go.kr/expo/index.jsp		

*자료출처 : <http://job.seoul.go.kr/expo/index.jsp>

고용노동부, 일본 등 해외취업 연기·보류 청년의 피해최소화 위해 적극 지원

□ 일본* 등 일부 국가의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의 취업비자가 보류·연기되고 있는 상황임

* 일본: ① 2.27.부터 최근 14일내 대구·청도 방문자 입국금지, 이에 더해 3.7.부터 경북 일부(경산·안동·영천시, 칠곡·의성·성주·군위군) 방문자 또한 입국금지 ② 3.9.부터 기 발급된 사증효력 정지, 사증 면제조치 정지 및 한국 방문자 14일간 지정장소 대기요청

□ 정부는 현재 해외취업 희망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아래의 조치를 실시해 나가고 있음

① 해외취업 청년에 대한 비자발급 보류·연기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는 대로, 즉시 보류된 비자가 재발급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

* K-Move 스쿨(연수기관), 해외 16개 K-Move센터, 민간 해외취업 알선기관, 해외 리쿠르트 회사 및 구인기간 등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황 파악

② 기존 연수(K-Move스쿨) 참여자의 경우 비자발급이 보류된 기간 동안 직무·어학능력을 향상·유지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해외취업 연수서비스를 연장해서 제공할 계획임

③ 해외취업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(www.worldjob.or.kr)에 「입국제한 관련 온라인 고충센터」를 운영(3.11.~)하면서,

- 비자가 보류된 청년들에게 온-오프라인 상담*(일본현지 노무상담 포함), 취업사전 또는 어학교육, 국내취업 연계 등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임

* 서울, 부산 등 국내 해외취업센터, 온라인 커뮤니티 멘토 등을 통한 상담

 OPEN 공공누리	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이부용 서기관(☎044-202-7494), 한국산업인력공단 한현정 차장(☎052-714-860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

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,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

-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 → 388만원 이하 노동자 -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 등)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미적용 -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와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강순희)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용자 소득요건을 한시적(2020.3.9.~7.31.)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8천명(+5.2천명)으로 확대했다.

* 용자예산 확대: 2020년 885억원→1,103억원 (+218억원)

○ 특히,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,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(2020.3.9.~7.31.)으로 생활안정자금 용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.

*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자대상이 아님

*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인: <http://total.kcomwel.or.kr>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개인 → 정보조회

□ 생활안정자금 용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, 장례,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(年 1.5%)로 1인당 최대 2,000만원(용자종목당 200~1,250만원)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.

○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·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%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「임금감소생계비」 또는 「소액생계비」 용자를,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「임금체불생계비」 용자를 활용할 수 있다.

□ 용자신청은 인터넷(근로복지넷: <http://www.workdream.net>)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.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(예: 진료비 영수증, 의사진단서, 사망진단서 등)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.

- 근로복지공단은 용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용자 결정을 통보한다.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(www.ibk.co.kr → 온라인즉시대출 상품 → I-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)을 통해 즉시 용자금을 받을 수 있다.

□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“이번 생활안정자금 용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- <붙임>
- 1. 「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」 제도개요 및 운영 현황
 - 2. 용자대상자 요건 비교
 - 3. 생활안정자금 용자(리플렛)
 - 4. 생활안정자금 용자 예산 및 집행실적

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배정대 사무관(☎044-202-7561),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이수민 차장(☎052-704-730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

참고 1

「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」 제도개요 및 운영 현황

-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, 장례,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(年 1.5%)로 1인당 최대 2,000만원(용자종목당 200~1,250만원)까지 빌려주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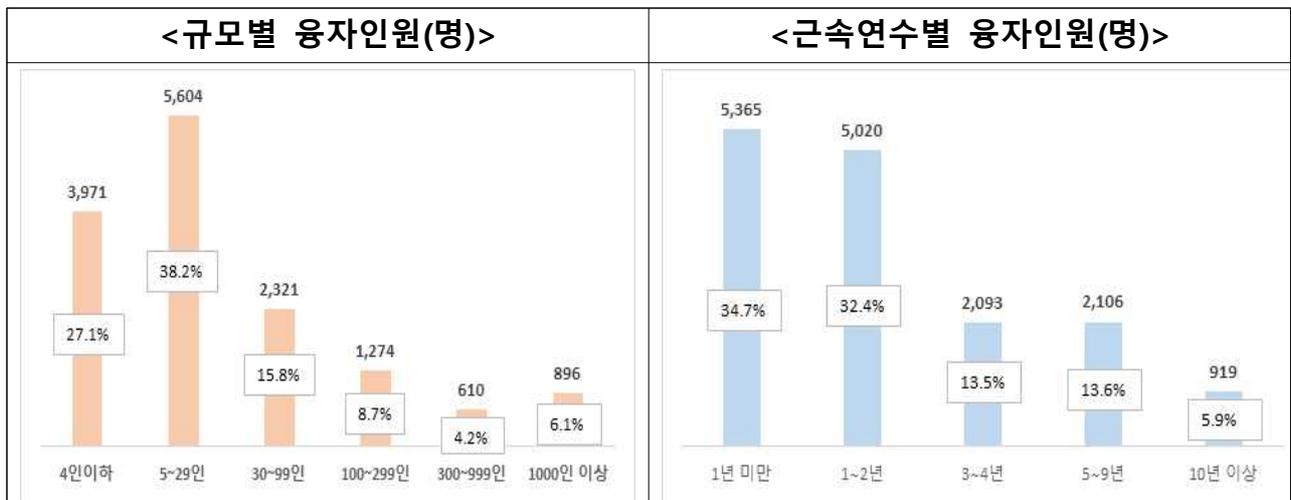
용자대상	(현행)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/3 이하인 노동자(2020년 259만원) (특례)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(2020년 388만원)
용자금리	연 1.5%
용자조건	1년 거치 3년(4년) 원금균등분할상환
담보여부	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(연 0.9~1.0% 신용보증료 개인 부담)

- 지난해 15,503명의 노동자가 1인당 평균 639만원의 용자를 받았다.



* 2015년 메르스 등으로 추경(240억원) 편성 집행

- 용자인원의 81.1%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이고 근속연수 3년 미만인 노동자가 전체의 67.1%를 차지했다.



참고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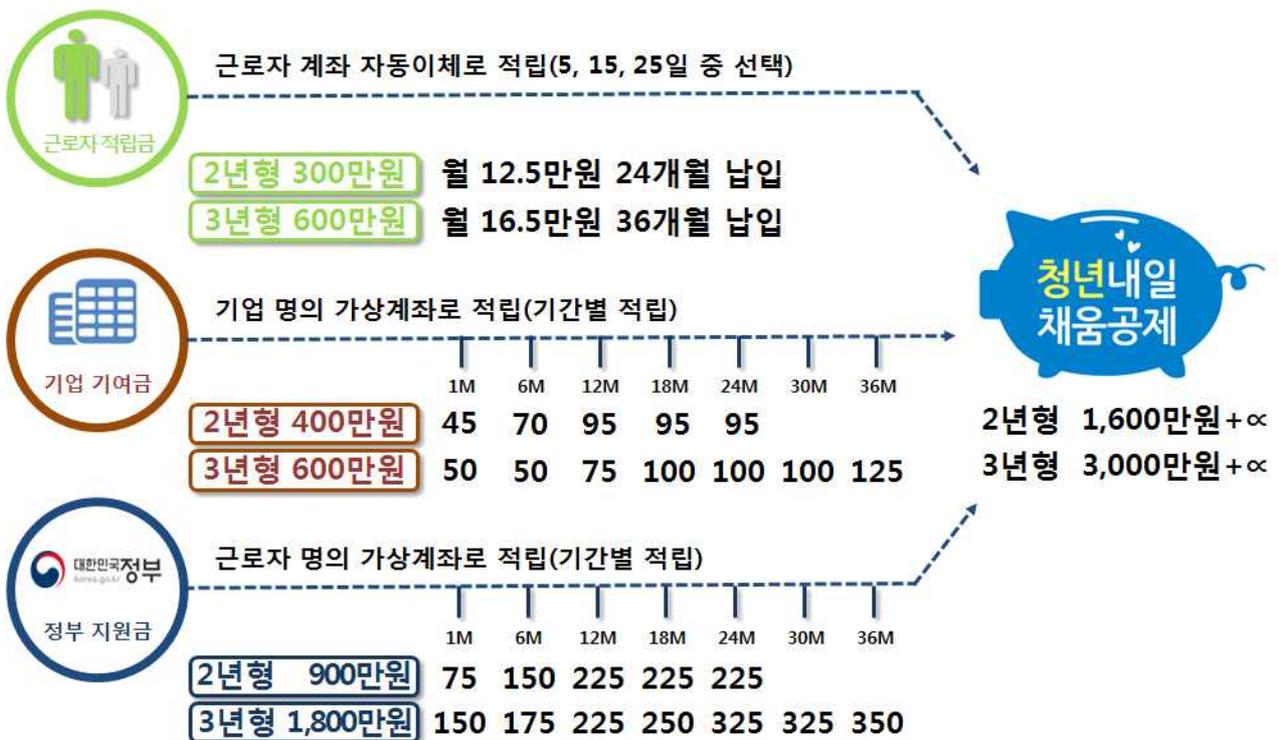
「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」 용자대상자 요건 비교

용자종류	현행 규정	특례 규정
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	○ 3개월 이상 근속 중* *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○ 월평균소득이 <u>3인 가구 중위소득의 2/3이하인 노동자</u> (‘20년 259만원) *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미적용	○ <좌 동> ○ 월평균소득이 <u>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</u> (‘20년 388만원) * 비정규직/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
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	○ 월평균소득이 <u>4인 가구 중위소득의 2/3이하인 노동자</u> (‘20년 317만원) *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미적용	○ 월평균소득이 <u>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</u> (‘20년 388만원) * 비정규직/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
⑥ 임금감소생계비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	○ 6개월 이상 근속 중 ○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,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% 이상 감소 ○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)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이하(‘20년 181만원)	○ <좌 동> ○ 위기경보(경계~심각)기간 특정월의 소득이 위기경보(경계) 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% 이상 감소 ○ 월평균소득이 <u>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</u> (‘20년 388만원) * 비정규직/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
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	○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<u>4인 가구 중위소득 2/3의 70% 이하인 노동자</u> (‘20년 222만원)	○ 월평균소득이 <u>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</u> (‘20년 388만원) * 비정규직/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<u>비적용</u>
⑦ 소액생계비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	○ 3개월 이상 근속 중 *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○ 개인사정,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용자대상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 ○ 임금이 감소한 용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)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이하(‘20년 181만원)	○ <좌 동> ○ <좌 동> ○ 월평균소득이 <u>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</u> (‘20년 388만원) * 비정규직/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
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	○ 임금이 감소한 용자대상 월 소득이 <u>4인 가구 중위소득 2/3의 70% 이하인 노동자</u> (‘20년 222만원)	○ 월평균소득이 <u>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</u> (‘20년 388만원) * 비정규직/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<u>비적용</u>

* 종전 용자기준에 따라 용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

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

- **[개 요]**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신설(16.7월)
 -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,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'3자 공동적금'
- **[지원대상]**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'청년' 및 '채용기업'
 - (청년) 만 15~34세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
 - *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, 예외적으로 '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' 가입 가능(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)
 -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(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)
- **[지원방식]** 가입기간 동안 청년·정부·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



*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

- **[중도해지]**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
 - (본인 납입분)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**환급**(해지사유 무관, 2, 3년형 동일)
 - (기업 기여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**정부 환수**(“)
 - (정부 지원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
(2년형은 50%, 3년형은 30% 수준)

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[총 4개소]

운영기관명(대표전화)	운영기관명(대표전화)
(주)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(02-2006-9583)	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(02-3399-7651)
인크루트알바콜(주)서울북부지사(02-2186-9059)	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(02-6959-5570)

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

1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

●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→ “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” 검색

1	고용창출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(심사형, 요건형)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(심사형)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(심사형) 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
2	고용안정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규직 전환지원(심사형), ② 워라벨일자리장려금 ③ 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(심사형), ④ 출산·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
3	고용유지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고용유지지원금, ② 무급 휴업·휴직고용유지지원금
4	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, 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

2 중복지원 사업 대상

양 장려금	중복 시	지원 비율
일자리 함께하기 (100% 지급)	고용창출장려금	+ 70% 추가지원
	고용안정장려금	+ 100% 추가지원

3 문의처

○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(☎ 02-2171-1800~5)

○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

고용장려금 지원사업		지원내용
고창 장려금 공출금	일자리 함께하기 지원	(공모형) 교대제 개편, 실 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,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 40만원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 ·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~10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40만원, 1~2년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
	청년추가 고용장려금	· 청년(만15~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, 중견기업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) 사업주 [청년 추가채용 1인당] 연 최대 900만원, 3년지원
	국내 복귀 기업 지원	·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중견기업 월 30만원
	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	·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, 중견기업 월 40만원
	고용촉진 장려금 지원	·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
	정규직 전환지원	·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증가 보전금: 월 최대 60만원, 간접노무비 월 30만원
고안 장려금 공정금	위라벨일자리 장려금	·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감소 보전금: 월 최대 40만원, 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, 간접노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20만원
	일.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	·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를 도입·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] 간접노무비: 1주당 5~10만원,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: 시스템 구축비의 1/2 이내, 2,000만원 한도(기업당)
	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	· 육아휴직등 부여: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· 대체인력지원: 출산전후(유산사산)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[해당 근로자 1인당] -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(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)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-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: 육아휴직 월30만원(대규모기업 제외)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(대규모기업 10만원)
	고용유지 지원금	·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·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* 지원사항 별도 문의
장년· 고령자 고용 장려금	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	·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·휴직필요성, 근로자 복귀 가능성,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* 지원사항 별도 문의
	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	·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(1~23%)을 초과하여 고용 [지원수준]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%까지. 다만,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
	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	·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·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, 정년폐지, 재고용하는 사업주 [지원수준]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(분기별 신청), 최대 2년간 지원